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26186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네시스 담당변호사 남윤중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울 담당변호사 김민규, 전선이

변론 종결2023. 5. 26.

판결 선고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소위 '마담'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원고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960,0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와 안주 제공 및 유흥접대 서비스를 받았다.

1	2016. 11. 1.	3,300,000
2	2016. 11. 8.	1,750,000
3	2016. 11. 10.	400,000
4	2016. 11. 11.	2,400,000
5	2016. 11. 18.	2,470,000
6	2016. 11. 21.	4,080,000
7	2016. 12. 7.	3,410,000
8	2017. 1. 9.	2,220,000
9	2017. 3. 3.	2,400,000
10	2017. 3. 7.	2,420,000
11	2017. 4. 7.	2,420,000
12	2017. 4. 26.	2,670,000
13	2017. 5. 12.	2,830,000
14	2017. 5. 22.	3,280,000
15	2017. 6. 1.	3,240,000
16	2017. 9. 25.	2,770,000
17	2017. 10. 19.	2,590,000
18	2017. 10. 24.	2,650,000
19	2017. 11. 7.	3,480,000
20	2017. 11. 15.	2,430,000
21	2017. 11. 21.	2,760,000
22	2017. 11. 27.	2,420,000
23	2017. 12. 13.	4,220,000
24	2017. 12. 22.	2,350,000
합계	64,960,000	

다. 피고는 2017. 1. 10.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010,000원을 변제하였다.

1	2017. 1. 10.	2,000,000	계좌이체
2	2017. 4. 7.	2,110,000	현금교부
3	2017. 5. 19.	2,500,000	계좌이체
4	2017. 5. 23.	2,700,000	계좌이체
5	2017. 9. 28.	2,800,000	계좌이체
6	2017. 10. 25.	2,300,000	계좌이체
7	2017. 11. 15.	1,100,000	현금교부
8	2017. 11. 16.	1,000,000	계좌이체
9	2017. 11. 22.	4,200,000	계좌이체
10	2017. 11. 28.	2,000,000	계좌이체
11	2017. 12. 1.	2,000,000	계좌이체
12	2017. 12. 18.	3,300,000	계좌이체
합계	28,0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외상 주류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주류대금 중
36,950,000원(= 64,960,000원 - 28,01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6,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류대금 중 36,95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E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와 E이 2022. 9. 1. 각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서울강남경찰서 F)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8,0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남은 외상 주류대금이 없고, 원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 제1호증[계산서(거래내역서)]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로서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주류대금 및 유흥점대 서비스료의 액수가 매우 고가인 유흥주점에서는 고객이 계산하거나 외상약정을 할 때 고객과 원고와 같은 담당자가 주류대금 및 유흥점대 서비스료의 내역을 서로 확인한 후 협의과정을 거쳐 금액을 확정하는데, 위 계산서(거래내역서)도 원·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주류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그 연락과정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지급할 날짜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2017. 12. 22.까지 발생한 주류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4. 26.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가 그때까지 미지급된 주류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계산서(거래내역서)]의 증명력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류대금 채권은 '음식점의 음식료 또는 소비물의 대가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음식점' 또는 불특정 다수가 오락(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키는 '오락장'의 '음식료' 또는 그 영업자가 공급한 '소비물의 대가'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은 각각의 주문일에 해당 대금의 변제기가 각각 도래하고 그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후 피고의 채무승인일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2018. 4. 26.에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20.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일건